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15. . .	
연월일	(제 회)	

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 종 섭 (행정자치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1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일부개정(법률 제12504호, 2014.3.24. 공포, 2016. 1.1. 시행)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보관시 암호화 조치에 대한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(안 제17조제2항)
- 나.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에 대한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1조의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별도 합의 필요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5.7.28. ~ 9.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

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만 제14세 미만”을 “만 14세 미만”으로 한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)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2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암호화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00만명 미만의 주민등록번호 보관 : 2017년 1월 1일

2. 100만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 보관 : 2018년 1월 1일

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기술적·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암호화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3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53조제2항 중 “인터넷 홈페이지 및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”를 “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”로 한다.

제60조제2항 중 “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”를 “한국인터넷진흥원의”로 한다.

제62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24조제4항에”를 “법 제24조의2제4항에”로, “「전자정부법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”를 “「전자정부법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권한(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·처리 및 상담과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)을”를 “다음 각 호의 권한을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·홍보
2.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

3.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

4.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(법 제62조에 따라 개인 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·처리 및 상담과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)

5.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

제62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별표 2 제2호 차목부터 허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고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카목(종전의 차목)의 위반행위란 중 “법 제24조의2제2항”을 “법 제24조의2제3항”으로 한다.

차. 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4호의3	600	1200	2400
--	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	----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1조의2,

제62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(동의를 받는 방법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7조(동의를 받는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</u> <u>③ ----- 만 14세 미만 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u> <u>제21조의2(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)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</u>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만 제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·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. <u>③ (생략)</u> <u><신 설></u>	

제39조(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) ① (생략)

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(이하 "한국정보화진흥원"이라 한다)

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2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암호화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00만명 미만의 주민등록번호 보관 : 2017년 1월 1일

2. 100만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 보관 : 2018년 1월 1일

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기술적·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암호화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39조(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<삭 제>

2. (생 략)

제53조(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
시) ① (생 략)

②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
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
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
페이지 및 「신문 등의 진흥에
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국을 보
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
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
제60조(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)

① (생 략)

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3조
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
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
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
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
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
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2조(권한의 위탁) ① 행정자치
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
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다.

1.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
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·홍보

2.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관계
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

2. (현행과 같음)

제53조(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
시) ① (생 략)

② -----

----- 인터넷 홈
페이지 또는 「신문 등의 진흥
에 관한 법률」에 -----

-----.

제60조(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한국인터넷진흥원의 -----

-----.

제62조(권한의 위탁) ① <삭
제>

기준의 개발

3.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

요구의 접수 및 처리

4.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

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
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
의 접수

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
공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「전
자정부법」 제72조제1항에 따
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
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3조
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
에 관한 권한(법 제62조에 따라
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
된 신고의 접수·처리 및 상담과
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)을 한
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
의2제4항에 ----- 「전
자정부법」 제72조제1항에 따른
한국지역정보개발원 또는 「정
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
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른
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위탁할
수 있다.

③ ----- 다음 각
호의 권한을 -----
-----.

1.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
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·홍보
2.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관계

<u><신 설></u>	<u>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</u> <u>3.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</u>
<u><신 설></u>	<u>4.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(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·처리 및 상담과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)</u>
<u><신 설></u>	<u>5.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</u>
제62조의3(규제의 재검토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62조의3(규제의 재검토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00 - 4103